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1984. 4. 6. 제 정	2004. 10. 4. 일부개정
2009. 9. 19. 일부개정	2010. 11. 6. 일부개정
2013. 6. 5. 일부개정	2014. 10. 30. 일부개정
2015. 10. 31. 전부개정	2018. 11. 10. 전부개정
2019. 10. 26. 일부개정	2020. 05. 09. 일부개정
2021. 11. 13. 일부개정	2022. 05. 14. 일부개정

전문

제1장 총칙	1~8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9~20
제2절 동아리연합회 총회	21~29
제3절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30~40
제4절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41~50
제5절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51~61
제6절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62~65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66~72
제2절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73~78
제4장 분과	79~86
제5장 중앙동아리	
제1절 등록	87~93
제2절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94~98
제6장 선거	99~105
제7장 재정	106~113
제8장 공간	114~120
제9장 회칙 · 세칙 · 규칙	
제1절 회칙 개정	121~126
제2절 세칙 · 규칙	127~129
제3절 해석	130~131
부칙	

전문

정의와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수호하는 것은 대학인의 영원한 사명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의 모든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고려대학교는 일제강점기부터 식민지 제국주의 압제에 맞서 싸워 온 민족의 대학이었으며, 독재정권의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외쳤던 4·18의거와 4·19혁명, 6월항쟁을 선도한 유서 깊은 대학이다.

우리의 전신인 씨클연합회는 과거 민주화운동과 학원자율화운동에서 주도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다. 한 세기가 마무리되고 21세기에 들어 동아리연합회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를 넘어 모든 생각과 실천을 포괄하는 자립적인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고 자주적인 학생자치를 수호하며, 모든 주체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존하는 대안공동체의 확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

모인사람(모람)에서 동아리, 동아리에서 동아리연합회로 확장되는 우리의 역할을 다짐하면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이 회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4년 4월 6일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된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는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회의는 이 회의 구성원인 모든 동아리 모람의 역량을 모아 학원의 민주화와 대학문화의 창달을 선도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회의는 이 회의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와 학생자치의 제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이 회의는 대학문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내 모든 단체의 존립을 위해 힘쓴다.

제3조 【지위】 ① 이 회의 지위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동아리연합회 관련 「총학생회칙」에 근거한다.

② 이 회의는 고려대학교 서울 인문사회계캠퍼스에 위치한다.

제4조 【중앙동아리】 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동아리 중 이 회의에 정식등록된 동아리를 “중앙동아리”라 칭한다.

② 중앙동아리의 구성원으로서 이 회의에 등록된 자는 이 회의 정회원이 된다.

③ 중앙동아리는 이 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회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④ 중앙동아리는 이 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회의 회장단과 각 분과장 등을 선출할 권리를 지닌다.

⑤ 중앙동아리는 이 회의 구성원으로서 각 동아리의 활동을 대학문화 창달이라는 목적에 합치하여 진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중앙동아리는 이 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자치와 대학문화를 부인하거나 위협하는 시도에 맞설 연대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⑦ 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는 「징계세칙」에 따른다.

제5조 【회원】 ① 이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적한 자로서 이 회의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교류회원으로 분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의 정회원이 된다.

1.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회의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인 자
2.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일반휴학 중인 자로 이 회의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인 자
3.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등록·일반휴학 중인 자로 이 회의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이 아닌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집행위원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되며, 제6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군휴학·질병휴학 중인 자로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인 자
2.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등록된 자로 가등록 동아리의 회원인 자
3.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일반휴학·군휴학·질병휴학 중인 자로 가등록 동아리의 회원인 자
4.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군휴학·질병휴학 중인 자로 이 회의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이 아닌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집행위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의 교류회원이 되며, 제6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본교 세종캠퍼스 및 국내외 타교의 학생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수학 중이며 이 회의 동아리의 회원인 자
2. 학점교류 및 국제하계대학·국제동계대학 등의 사유로 이 회의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회의 동아리의 회원인 자
3. 본교 세종캠퍼스 및 국내외 타교의 학생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수학 중이며 이 회의 동아리의 회원이 아닌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집행위원인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회원의 성별, 장애, 병력,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연령, 사회경제적 처우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③ 이 회의 회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지니며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④ 이 회의 회원은 학생자치와 대학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⑤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존립을 부인하거나 이 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시도에 저항할 의무가 있다.

⑦ 이 회의 회원은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⑧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⑨ 이 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세칙」에 따른다.

제7조 【기구】 ① 이 회의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2.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3. 분과

② 제5장제2절에 따른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제65조에 의해 구성되는 임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조 【대표자의 구성】 ① 이 회의 최고 대표자로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을 둔다.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된다.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② 이 회의 각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의 안건을 처리하는 분과장을 둔다. 분과장은 각 분과당 1인으로 한다.

③ 이 회의에 등록된 각 동아리의 대표로 동아리 대표를 둔다. 각 동아리 대표의 선출과 임기는 각 동아리의 재량에 위임한다.

④ 이 회의 회원은 제1항, 제2항의 직을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의 직을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9조 【기본이념】 이 회의 의결기구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 【의결기구의 위계】 ① 이 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특별한 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기】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종료 48시간 이후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종료 48시간 이후까지

제12조 【의장】 ① 이 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1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장 직무의 제한】 ①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총회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의장일 때, 동아리연합회 총회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하여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1. 의장 개인과 자기 관련성이 있는 안건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과 위원의 해임건의안
3.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③ 의장이 물러나면 각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의장의 인준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 【사무·재정】 ①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은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결기구의 재정은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있다.

제15조 【긴급한 사항】 ① “긴급한 사항”이란 회의 소집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항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제4항 혹은 제52조제4항에 따라 각 의결기구의 의장이 소집요구 없이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혹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의장의 결정으로 동아리연합회 총회 혹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집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2. 공고 기간·절차를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회의는 긴급한 사항

으로 소집할 수 없다.

제16조 【안건의 발의】 ① 안건 발의는 각 의결기구에서 정한 발의요건에 따른다.

② 정기회의를 제외한 회의에서 소집 공고부터 산회 전까지의 안건 발의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회의의 소집 공고부터 산회 전까지 발의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17조 【연서의 심의】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대한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가 연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위 의결기구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연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가 연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개의 직후 연서의 정당성에 대해 심의한다.

③ 연서의 서식 및 기재 정보가 「사무처리세칙」에 따른 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각 의결기구는 연서가 무효하다고 볼 수 있다.

④ 각 의결기구의 구성원과 방청인들은 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제18조 【안건의 의결】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 과반의 의견이 없을 때, 기권이 과반수일 때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과반의 의견이 없을 때에 의결기구는 즉시 재논의를 하여야 한다. 재논의를 한 후에도 과반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동아리연합회 총투표는 투표)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를 개의하여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원격회의를 개의할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원격회의의 진행 방식과 절차를 명시한 규칙을 제정하여 해당 규칙에 따라 원격회의를 진행한다.

제19조 【방청·발언권】 ①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특정 개인·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의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진행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 총회

제21조 【지위】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2조 【구성】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23조 【의장】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지 못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되는 자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장 사고 시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모두 사고인 상태에서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총회가 소집되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해당 동아리연합회 총회 개의 직후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4조 【소집】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동아리연합회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2.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재적 동아리 4분의 1 이상의 소속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회 총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때 개의일은 소집요구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동아리연합회 총회 의장이 동아리연합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소집 공고】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4조 제4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③ 동아리연합회 총회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소집을 학생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회관의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동아리연합회 총회 의장은 그 해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동아리연합회의 공식 전자 상 계정을 통해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26조 【개의·의결요건】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재적 동아리 3분의 1 이상의 정회원 300명 이상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를 한 회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이 제의하여 동아리연합회 총회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8조제4호의 안건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28조 【안건】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재적 동아리 4분의 1 이상의 소속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제71조에 따른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탄핵안

제29조 【안건 위임】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개의하지 못한 동아리연합회 총회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3절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제30조 【지위】 동아리연합회 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31조 【투표권】 ① 투표인단은 동아리연합회 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② 투표인단은 이 회에 정식등록된 각 동아리의 정회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제32조 【시행】 동아리연합회 총투표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시행 결정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제33조 【시행 공고】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시행 일시
2.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34조 【성립·의결요건】 ① 동아리연합회 총투표는 투표인단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인단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확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투표관리위원회】 ①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동아리연합회 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운

영위원 전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시행 준비를 보조한다.

④ 그 밖에 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3일의 범위에서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았으면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투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표인단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 【결과 공고】 동아리연합회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9조 【무효처리】 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처리한다. 단, 명부상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 오차는 3까지 허용한다.

② 명부상 총 투표자 수와 총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동아리연합회 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40조 【준용】 그 밖에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제41조 【지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이 회와 분과 및 중앙동아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이다.

제42조 【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2. 각 분과의 분과장
3. 각 중앙동아리(이때 중앙동아리를 대표하여 동아리 대표가 파견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각 분과장, 각 중앙동아리의 대표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중앙동아리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서는 책임 있는 대리인을 파견하여 그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해당 중앙동아리의 대표에게서 대리인 임명장을 통해 자격을 위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동아리 내 정회원이어야 하며 각 동아리의 대표

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④ 대리인 임명장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의 예정일 3일 전까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개의 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대의원의 결석】 ① 중앙동아리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해당 동아리의 대표 또는 책임 있는 대리인을 파견하지 못할 때에는 불참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불참사유서의 제출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개의 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중앙동아리 대표는 해당 회의 산회 후 7일 내로 불참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불참사유서와 불참증빙자료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불참사유서의 유효한 사유는 동아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동아리의 공식 행사에 한한다.

⑤ 그 외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참석에 관한 기준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44조 【의장】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하며, 동아리연합회 회장 사고 시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의 직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45조 【정기회의】 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의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각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의일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임시회의】 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중앙동아리 대표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재적 동아리 5분의 1 이상의 소속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8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안건 위임

5. 제70조에 따라 발의된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6. 제71조에 따라 발의된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탄핵안의 동아리연합회 총회·동아리연합회 총투표 부의

7. 제121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②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의장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개의 직후 긴급한 사항의 성립 여

부에 관하여 심의한다. 긴급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며, 긴급한 사항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산회한다.

④ 임시회의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에서도 소집가능하다.

제47조 【소집 공고】 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의일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소집은 개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

③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학생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회관의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그 해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동아리연합회의 공식 전자 상 계정을 통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48조 【개의·의결요건】 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71조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86조의 분과 신설·폐지·통합 재편안에 관한 사항
2. 제90조의 정식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24조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징계세칙」에 따라 대표자회의에 상정된 동아리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49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의하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가 의결하거나 출석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124조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28조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71조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혹은 그에 준하는 자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3. 「징계세칙」에 따라 대표자회의에 상정된 동아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⑤ 의장은 안전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50조 【안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된 안건
3. 제70조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사퇴 허가 안건
4. 제71조에 따라 발의된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탄핵안의 동아리연합회 총회·동아리연합회 총투표 부의 안건
5. 「징계세칙」에 따라 대표자회의에 상정된 동아리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 정식등록에 관한 안건
7. 동아리연합회의 공간 활용에 관한 안건
8.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안건
9.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안건
10.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인준에 관한 안건
11. 「동아리연합회 회칙」·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
12.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건
13.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예산안·결산 심의에 관한 안건

제5절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제51조 【지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행정적 실무를 위하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52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이 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2. 각 분과의 분과장

제53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의 의무】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은 대학문화 발전과 학생자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은 이 회 회원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자유로운 학술 활동을 진흥할 의무를 지닌다.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은 이 회의 의결, 집행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이 회의 사업 집행에 대해 성실하게 책임을 질 의무를 지닌다.

④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이 회의 의결과정 역시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은 이 회 회원이 회원의 성별, 장애, 병력,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 연령, 사회경제적 처우에 의한 차별 받을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사항을 적절한 양식과 수단에 따라 성실히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⑦ 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등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4조 【의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하며,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사고 시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모두 사고일 때, 혹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제58조에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회의를 개의하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호선되는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55조 【정기회의】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회의 개의 전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들에게 회의 장소의 변경이 공지되어야 한다.

제56조 【임시회의】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재적 동아리 10분의 1 이상의 소속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4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제57조 【특별위원회】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한다.

④ 특별위원회 구성 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수시로 활동 내역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예산안·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매 학기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위원 명단 및 활동 내역, 예산안·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⑧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인준된 후 첫 번째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재인준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개의·의결요건】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89조의 가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0조의 정식등록에 관한 사항
3. 제91조의 재등록에 관한 사항

제59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이 제의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하거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60조 【안건】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재적 동아리 10분의 1 이상 소속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4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안건

② 세칙에서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권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권한】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및 안건 발의
2. 동아리연합회 총회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개의 및 안건에 관한 세부 사항의 논의 및 결정
3. 동아리연합회 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제24조제3항과 제46조제2항에 따른 동아리연합회 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개의일 결정
4.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명단의 확정
5. 제57조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사전 인준
2.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보고 사항의 사전 심의
3.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심의·조정(단,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4.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집행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
5.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 시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소집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 회 회원과 중앙동아리 및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중앙동아리에 대한 사업지원금 배정 심의
 2. 이 회 회원 및 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의 결정
 3. 중앙동아리 재등록에 대한 심사
 4. 미등록 동아리의 가등록에 대한 심사
 5. 가등록 동아리의 정식등록에 대한 사전 심사
 6. 중앙동아리 및 가등록 동아리의 탈퇴 심의
- ④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⑤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비를 사용하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등의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 심의한 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또한 집행기구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안과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 규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사전 심의한다.
- ⑦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대외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긴급한 사항이라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판단하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협의·활동 직후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 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에 대하여 동의권
 2. 직전 학기 동아리연합회 회비의 5%를 초과하는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또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동의권
- ⑧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 회를 대표하여 학교 기구의 학생 대표가 되는 자의 배석 하에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논의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⑨ 「징계세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절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제62조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①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 회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의 공고 48시간 후 구성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11월 15일로 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때

3.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탄핵되고, 해당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분과장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③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확정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내에 비상대책위원과 위원장을 공고한다.

제63조 【권한·업무】 ①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회칙·세칙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으로 본다.

②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4조 【위원장】 ①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제65조 【임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① 임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분과별로 2명씩 파견되어 임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을 구성한다.

③ 임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임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66조 【지위】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동아리연합회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때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 【권한】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이 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하며,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구성권·임면권을 가진다. 또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하며,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과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제61조제7항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또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의무】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이 회의 대표로서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이 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후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선출과 후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또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었던 자가 이 회의 대표로 학교 기구의 위원이 될 때 제67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9조 【임기·연임금지】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후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후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면 후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개표 예정일 48시간 후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본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후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0조 【사퇴】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모두 사퇴하고자 하거나, 둘 중 한 명만

사퇴하고자 할 때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만 사퇴한 경우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71조 【탄핵】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2. 재적 동아리 4분의 1 이상의 소속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

③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제2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7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동아리연합회 총회·동아리연합회 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해당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의 직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⑤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동아리연합회 총회·동아리연합회 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부의 의결 이후 동아리연합회 총회 소집,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시행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⑥ 탄핵안은 동아리연합회 총회일 때 제26조, 동아리연합회 총투표일 때 제34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⑦ 동아리연합회 회장만 탄핵된 경우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72조 【직무정지】 제71조제4항에 의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었을 경우 그 대상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탄핵 부의안이 부결되거나, 동아리연합회 총회·동아리연합회 총투표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제73조 【지위】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74조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이 된다.

1.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국원

제75조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 ①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을 보좌하며, 이 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감독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임명하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중 한 명을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새롭게 임명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6조 【국서】 ①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임명하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때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전원에 대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새롭게 임명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7조 【업무】 ①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개의·시행을 준비한다.

⑤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의 개최를 준비한다.

⑥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⑦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제78조 【운영】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혹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분과

제79조 【지위】 분과는 유사한 전문성을 갖춘 동아리들의 연합체로 동아리연합회 내에서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0조 【구성】 분과는 해당 분과에 정식등록된 동아리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81조 【분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분과 구성원은 분과 내 사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2조 【분과장】 ① 분과장은 각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회의 의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② 분과장은 분과의 각종 사무를 집행한다. 또한 이 회의 각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③ 분과장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각 동아리에 학기당 최대 2회의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분과장은 각 분과의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⑤ 분과장은 분과 내의 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정 동아리나 회원들의 여론을 편중되게 수용할 수 없다.

⑥ 분과장 궐위 시, 해당 분과에서 분과회의를 거쳐 분과장 대리인을 선출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⑦ 분과장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 회의 의결기구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

⑧ 분과장 대리인은 분과를 대표하여 의결기구에 참석하며 각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⑨ 분과장 대리인은 의결기구에서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83조 【분과장의 임기·연임금지】 ① 분과장의 임기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후임 분과장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임기 만료 90일 이전(이때 기준일은 3월 31일로 한다)에 분과장의 사퇴, 탄핵, 기타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분과장은 후임 분과장 선거에서 분과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84조 【분과장의 사퇴·탄핵】 ① 분과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는 분과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과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할 수 있다. 또한, 「징계세칙」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에서 자격박탈 또는 영구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면 자동으로 분과회의에 탄핵안이 발의된다.

③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분과장에 대한 분과장 소속 동아리의 징계는 탄핵안 심의 및 의결 이후로 보류한다.

④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분과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제2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분과회의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분과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분과회의 구성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⑤ 분과회의는 제3항의 연서 심의가 완료되면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분과장은 분과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하며, 분과회의에서 선임한 1인이 임시의장을 맡는다.

⑥ 제2항에 따라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분과장은 분과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⑦ 분과장이 탄핵되면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 【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각 분과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분과회의는 각 분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근거하여 분과 고유의 사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③ 분과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분과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의무가 있다.

④ 분과회의의 구성원은 분과회의 의장인 분과장과 해당 분과 내 각 중앙동아리의 대표로 정한다. 다만 해당 동아리의 대표가 사고 등으로 참석할 수 없을 시 책임 있는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동아리 내 정회원이어야 하며 각 동아리의 대표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⑤ 분과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분과장 탄핵안과 분과 개편안 또는 분과장 재량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안건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행한다.

1. 동아리의 제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사무
2. 분과의 행사나 사업의 기획
3. 분과장 탄핵
4. 분과 재편에 관한 논의
5. 분과 예산의 집행과 감사
6. 분과 내 인권과 다양성 존중 방안 및 안전 점검 방안에 대한 논의

⑦ 정기 분과회의는 한 학기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제2호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으면 분과회의 의장은 소집 요구 5일 이내로 분과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1. 분과장의 소집 요구
2. 분과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제86조 【재편】 ① "재편"이란 분과가 신설·폐지·통합되거나 소속 동아리가 다른 분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분과 신설·폐지·통합 재편안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당 분과(신설 예정 분과는 신설 예정 분과에 소속되고자 하는 동아리)소속 정회원 80명 이상의 연서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때 분과 재편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 신설·폐지·통합 재편안이 발의되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들은 분과 재편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 회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분과 이동 재편안은 분과 이동을 원하는 동아리 대표의 결정으로 분과회의에 상정된다. 이때 이동 전 분과와 이동 후 분과회의 모두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며, 이 안건은 각 분과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분과 이동 재편안이 각 분과회의의 동의를 받으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다.

제5장 중앙동아리

제1절 등록

제87조 【정의】 “등록”이란 동아리가 이 회의 회원 동아리로 가입 및 그 지위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제88조 【등록의 종류】 등록에는 가등록, 정식등록, 재등록이 있다.

제89조 【가등록】 ① "가등록"이라 함은 이 회의 정식등록되지 않은 동아리가 이 회의 소속된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기 위한 예비적인 절차이다.

② 가등록 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다. 이때 신청 기간은 매 학기마다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가등록 신청 시작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가등록 희망 동아리는 가등록 신청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익에 해를 가할 수 있거나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가등록 신청은 무효로 처리된다.

1. 학생문화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타 집단이나 단체에 대한 반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가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개 학년도 이상 학번과 3개 이상의 단과대학·독립학부로 구성된 15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경우 (이때 회원의 요건은 동아리연합회 정회원에 준하여야 한다)
2.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단, 매 학기당 총 3회 이상의 전문성 강화·대외·대중·공익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3.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4. 학외 정치단체의 지부가 아니한 경우

⑤ 가등록 신청에 대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가등록이 완료된 동아리는 가등록 심의가 통과된 이후의 최초 학기로부터 4학기 동안 가등록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90조 【정식등록】 ① "정식등록"이라 함은 1년 이상 가등록을 한 동아리가 가등록 심의가 통과된 이후의 최초 학기로부터 4학기 이내에 이 회의 소속된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정식등록 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다. 이때 신청 기간은 매 학기마다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정식등록 신청 시작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정식등록 희망 동아리는 정식등록 신청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정식등록 신청은 무효로 처리된다.

④ 정식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현재 중앙동아리로 등록 중인 동아리의 전문성에 비추어 지나친 전문성의 확장이나 세분화를 금한다.

1. 3개 학년도 이상 학번과 3개 이상 단과대학·독립학부로 구성된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경우 (이때 회원의 요건은 동아리연합회 정회원에 준하여야 한다)

2. 가등록 심의가 통과된 이후의 최초 학기로부터 2학기 이상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대외·대중·공익사업을 매 학기당 총 3회 이상 수행하였음이 인정된 경우

3. 정식등록 심의 직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에 1명 이상 참석하였음이 인정된 경우

⑤ 정식등록 신청에 대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6항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매 학기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식등록 절차를 수행한 동아리는 정식등록 심의가 통과된 이후의 최초 학기부터 중앙동아리의 자격을 취득한다. 해당 동아리는 유예 기간(정식등록 심의가 통과된 이후의 최초 학기 개강일 이전)내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과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1조 【재등록】 ① "재등록"이라 함은 정식등록을 한 중앙동아리가 매 학기마다 이 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모든 중앙동아리는 재등록은 매 학기 개강일 3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등록 심의를 받는다.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등록을 의결한다.

1. 3개 학년도 이상 학번과 3개 이상 단과대학·독립학부로 구성된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명시된 회원명부

2. 재등록서약서

③ 재등록서약서에는 동아리의 전문성과 관계가 있는 활동 내용과 활동 계획을 각각 3회 이상 기재해야 한다. 이때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등록서약서에 명백히 증명해야 하며, 동아리 내의 정기 활동은 개별 활동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1회로 본다.

1. 전문성 강화활동

2. 대학문화 발전을 위한 대외·대중사업

3. 공익사업

④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등록이 취소된다.

1. 3개 학년도 이상 학번과 최소 3개 이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회원 20명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회원명부의 회원 중 허위 등록자가 적발된 경우

3. 재등록서약서를 매 학기 개강일 30일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4. 해당 동아리가 동아리연합회나 학생사회에 위해를 끼치거나 분란을 조장한 경우
 5. 대학문화에 반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사기, 도박, 폭행, 마약, 자치공간의 파손 등)
 6. 동아리의 정체성을 위장하여 등록한 경우
 7. 동아리가 해당하는 학기에 어떠한 사업도 행하지 않은 경우
- ⑤ 재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동아리는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제명안건이 상정된다.

제92조 【회원명부】 ① 회원명부는 동아리연합회 내의 회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② 회원명부의 수정을 원하는 동아리 대표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수정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명부가 수정될 수 있다.

③ 회원명부의 공개로 인해 동아리 회원에게 사회적 차별·혐오범죄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신상의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경우 해당 동아리는 회원명부에 대한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 비공개여부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3조 【탈퇴】 ① 이 회에 가등록 또는 정식등록된 동아리는 이 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희망 동아리는 탈퇴 신청서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탈퇴 신청서에는 동아리 대표와 해당 동아리에 등록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탈퇴 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해당 동아리 대표가 출석하여야 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탈퇴가 의결된 동아리는 탈퇴 결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가등록 또는 중앙동아리 등록이 취소된다.

⑤ 탈퇴한 중앙동아리는 탈퇴와 동시에 동아리방과 해당 학기에 지원받았던 금액을 반환한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제94조 【지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는 이 회에 정식등록된 각 동아리 대표들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하는 수련회이다. 단, 각 동아리 대표 외에도 이 회의 회원은 누구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제95조 【목적】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연합회의 사업과 집행에 대한 논의와 평가
2. 동아리연합회 내 중대 안전에 대한 회원의 자유로운 발의와 토론
3. 학내의 자치활동 발전을 위한 토론 및 논의
4. 지속 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론 및 논의
5. 각 동아리 대표자들 사이의 사업 계획, 아이디어 등의 공유
6. 이 회 구성원들 사이의 친목과 연대감 도모

제96조 【시기】 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는 원칙적으로 매 방학 중 각 1회 개최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의 대내외적인 문제나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나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개최가 취

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취소 사유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일정을 수련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이 회의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불참 관련 징계는 무효로 한다.

제97조 【참가】 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참가는 각 동아리 대표자의 의무이다.

② 제1항의 중앙동아리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에서는 책임 있는 대리인을 파견하여 그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해당 중앙동아리의 대표에게서 대리인 임명장을 통해 자격을 위임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 임명장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개의 예정일 3일 전까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동아리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에 해당 동아리의 대표 또는 책임 있는 대리인을 파견하지 못할 때에는 불참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중앙동아리 대표는 해당 수련회 산회 후 7일 내로 불참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출된 불참사유서와 불참증빙자료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불참사유서의 유효한 사유는 동아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동아리의 공식 행사에 한한다.

⑦ 그 외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의 참석에 관한 기준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8조 【기획·운영】 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의 일정, 프로그램, 자료집 작성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위 기획사항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의 회장단과 각 운영위원, 집행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소개
2. 지난 학기에 대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간략한 사업보고서
3.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한 발제문
4. 공용공간 사용수칙
5. 반성폭력 규약 및 이 회칙 제6조에 근거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 규약

③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자료집은 개최 3일 이전까지 완성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자료집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당일 배포되어야 한다.

⑤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참가자는 이 회칙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⑥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참가자는 공용공간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이 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⑦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인 대응과 사후처리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수행한다. 대응과 사후처리의 집행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재량에 일임한다.

⑧ 공간사용 중 손망실비, 사고로 인한 의료비나 각 회원의 보험료 등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부담한다.

제6장 선거

제99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는 동아리연합회 회장 후보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 각 한 명씩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할 수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조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으로 당선된다.

제100조 【분과장 선거】 ① 분과장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분과장 선거에는 분과장 후보 단독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③ 분과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분과장으로 당선된다.

제101조 【시기】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시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재선거는 제104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같은 해 12월 또는 이듬해 3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혹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재선거가 무산된 경우 해당 재선거의 재선거는 해당 재선거가 무산된 이후 최초의 11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재선거의 재선거는 차수를 표시하여 구분하며, 세부 일정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분과장 선거는 매년 3월에 시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2조 【선거권·피선거권】 ① 이 회에 등록된 각 동아리별 정회원 4명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와 해당 동아리가 소속된 분과의 분과장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3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자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3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된 동아리가 소속된 분과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03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및 분과장 선거를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구성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및 분과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기간 동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사업 집행,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4조 【재선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제 3호, 제4호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당선인 중 한 명만 해당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분과장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분과장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때
3. 동아리연합회 회장단·분과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동아리연합회 회장단·분과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5. 동아리연합회 회장단·분과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새로 발견되어 후보 자격이 박탈된 때
6. 그 외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11월 15일로 한다.

③ 분과장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9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과회의는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와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회의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5조 【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106조 【원칙】 이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07조 【수입】 이 회 재정의 수입은 동아리연합회 회비, 학교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제108조 【동아리연합회 회비】 ① 동아리연합회 회비는 매 학기 등록과 함께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에서 배분받는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비의 배분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109조 【회계연도】 이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2학기 종강일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110조 【심의】 ① 동아리연합회 회비를 사용하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1학기 정기회의: 작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2.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2학기 정기회의: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심의한다.

제111조 【승인】 ① 동아리연합회 회비를 사용하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등은 제50조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결산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예산안·결산을 보고하는 자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안·결산을 승인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예산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112조 【재심의】 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예산안·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기구에의 동아리연합회 회비 지급을 유보하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기구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수정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 혹은 재심의에서도 예산안·결산이 부결된 기구에 대해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는 징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113조 【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공간

제114조 【학생회관】 ① 학생회관은 학생자치와 자유로운 대안문화의 발전을 위한 학생자치공간이다. 학생회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적인 학생자치의 수호
2. 시대에 구애되지 않는 대안문화의 보장
3. 국적, 성별, 장애, 병력,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연령, 사회경제적 처우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보장
4. 학내 및 사회적 불의에 항거한 학생의 보호

② 이 회의는 학생회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학생회관에 대한 학생의 자치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수호
2. 학생회관의 안전 및 청결 유지
3. 학생회관 내 공간 이용 시의 갈등 중재
4. 학생회관 내 학생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혹은 시설의 유입으로부터 학생회관 보호

제115조 【중앙동아리방】 ① 중앙동아리방은 동아리연합회 또는 학교본부에서 중앙동아리를 위하여 제 공한 공간이다.

② 중앙동아리는 자신들의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16조 【동아리연합회실】 ① 동아리연합회실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진행하고 모람들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간이다.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17조 【공용자치공간】 ① 공용자치공간은 동아리연합회에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모든 자치단체 를 위하여 개방 운영하는 공간이다.

② 이 회의 회원은 공간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용자치공간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③ 공용자치공간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8조 【공간배정】 ① 공간배정은 학생회관 및 기타의 학생자치공간에서 활동하던 동아리의 공간이 공실이 될 경우 이의 효율적 사용과 중앙동아리의 활동성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② 공간배정의 우선권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중앙동아리이고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의 동아리방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중앙동아리이고 위치상의 문제로 동아리 활동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중앙동아리이고 활동의 특성상 기존보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중앙동아리이고 활동성이 인정되어 기존보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중앙동아리이고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6. 학생자치의 공익을 위하여 공용공간의 추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간배정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 대표의 공간배정 신청
2.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공간배정 심의(이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를 통한 인준(이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새로운 공간이 동아리에게 배정될 경우 해당 동아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공간은 포기한다.

제119조 【안전관리】 ① 이회는 학생회관 및 기타 동아리의 자치공간의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자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회에 정식등록된 동아리는 매 학기 화재예방 안전관리서약서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 【안전점검】 ①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중앙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의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안전점검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회칙 · 세칙 · 규칙

제1절 회칙 개정

제121조 【개정안 발의】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발의
2.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재적 동아리 대표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4. 재적 동아리 4분의 1 이상의 소속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제122조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제123조 【개정안 심의】 ① 제121조제1호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을 위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개회에 앞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연서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개정을 의결하기 전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심의한다.

③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4조 【개정 의결】 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49조제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회칙 개정은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25조 【개정안 정리】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을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6조 【공포】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③ 본조는 세칙의 제정·개정·폐지에도 준용한다. 단, 세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2절 세칙·규칙

제127조 【세칙·규칙】 이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개정한다.

제128조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제50조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발의에 관하여서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④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공고에 관하여서는 제122조를 준용한다.

⑤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제125조를 준용한다.

제129조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폐지된다.

제3절 해석

제130조 【회칙 해석의 원칙】 ① 이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이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③ 이 회칙과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31조 【회칙해석위원회】 ①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칙해

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52조 혹은 제62조제2항, 제54조 혹은 제6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회칙해석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혹은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회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은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재정운용세칙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1호]

2013. 6. 5. 제 정 2015. 10. 31. 전부개정
2019. 2. 28. 전부개정

제1장 총칙	1~6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7~12
제3장 회계	13~17
제4장 집행기구 재정	18~19
제5장 재정운용규칙	20~21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이 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세칙은 수입 및 예산과 결산, 회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예산과 결산】 이 회의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매 회기마다 결산한다.

제4조 【회계책임】 ① 수입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② 회계업무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재정 담당자가 이를 행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재정 담당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동아리 교비”란 각 중앙동아리에 매 학기마다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사업지원금”이란 중앙동아리의 정기 및 비정기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정기 사업비”란 동아리연합회의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새내기새로배움터, 동아리박람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가을축제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비정기 사업비”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⑤ 이 세칙에서 “이월금”이란 매 학기 집행된 예산 중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말하며, 다음 학기의 수입으로 자동 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⑥ 이 세칙에서 “선거공영기금”이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및 분과장 선거의 시행과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 【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30조와 제131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제7조 【동아리연합회 예산 편성의 원칙】 ①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책정한다.

1. 동아리 교비와 사업지원금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사업
3.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사업
4.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분과별 사업
5.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사업

② 예산 편성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1.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예산안 편성
2.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사전 심의

3.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예산안 심의·확정

4. 예산 집행

제8조 【예산 결산 보고의 원칙】 ① 동아리연합회의 예산안과 결산은 매 회기마다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이 세칙 제13조, 제14조에서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③ 재정 담당자는 매 회기 수입 예상액과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 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일자별로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재정 담당자는 매 회기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 보고 한다.

⑥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재정 담당자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9조 【동아리연합회비 집행의 원칙】 ① 동아리연합회비는 이 회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② 동아리연합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동아리연합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⑤ 동아리 교비는 학교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재정 담당자가 모든 중앙동아리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사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지원금 매뉴얼을 따른다.

⑦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은 2학기 총학생회비 중 동아리연합회 배분분의 1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⑧ 선거공영기금 운용의 책임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있다. 선거공영기금의 결산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또는 분과장 선거 이후 최초의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단, 최초의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가 개의되면 그 임시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다.

⑨ 각 분과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1. 분과회의에서 결정·조정하여 편성
2.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⑩ 예산안 의결 이전에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

년도 동일회기 예산 집행에 준한다.

제10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의무】 ① 사업 지원금을 받은 각 동아리는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 서식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한 서식에 따른다. 단, 서식에는 행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예산 집행의 증명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결산의 작성】 ① 결산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목 또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각 항목별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증감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산내역에는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서식은 「총학생회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따른다.

제12조 【회계연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② 이 회의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09조에 따라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예산·집행·결산한다.

제3장 회계

제13조 【총수입】 총수입은 총학생회비 배분금,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의 수익금의 총합을 말한다.

제14조 【총지출】 ①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15조 【회계감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요령】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비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6. 각 동아리의 사업지원금 사용내역이 지급기준에 의거 합당한지의 여부

제17조 【감사보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집행기구 재정

제18조 【집행기구 재정】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동아리연합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있다.

제19조 【운영비】 ① 운영비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장 재정운용규칙

제20조 【재정운용규칙】 재정 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의 발의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발의

②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선거시행세칙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2호]

2013. 6. 5. 제 정 2015. 10. 31. 전부개정
2019. 2. 28. 전부개정 2019. 10. 26. 일부개정
2022. 05.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1~5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8
제3장 기관	
제1절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9~21
제2절 선거운동본부	22~30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31~32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33~40
제3절 선거운동	41~51
제4절 이의제기	52~53
제5절 징계	54~59
제6절 투표	60~79
제7절 투표 성립	80
제8절 개표	80~93
제9절 당선	94~95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96~97
제5장 선거시행규칙	98~99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와 분과장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와 분과장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와 분과장 선거는 전대 동아리연합회와 분과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와 분과장 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아리연합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 【대표자의 책임】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분과장, 동아리 대표자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와 분과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5조 【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30조와 제131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① 이 회에 정식등록된 각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분과장 선거에 4명의 정회원을 파견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정회원 여부의 확인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하루 전까지 제출된 회원명부를 통해 정회원으로 등록된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선거인명부】 ① 선거인단 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단, 제2호의 경우 모든 동아리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만 열람할 수 있다.

1. 열람용: 소속 동아리, 선거권자의 성명, 학번, 서명란을 표기(단, 익명을 요청하는 동아리가 있을 경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선거인단은 소속 동아리, 단과대학·독립학부 코드를 삭제한 학번, 서명란을 표기한다)

2. 보관용: 소속 동아리, 선거권자의 성명, 학번, 연락처를 표기

②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③ 선거가 공고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중 제6조에 따른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공고 이후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이 회의 회원은 선거인명부 작성완료 다음 날로부터 3일 간 열람용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⑤ 이 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 날 정오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 ⑦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직후 선거인명부를 파기해야 한다.

제8조 【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 1.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 모두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 3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이 회의 등록된 동아리의 정회원인 조
- 2. 이 회 중앙동아리 대표자 8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정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후보 간 중복추천은 가능하며 「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의하며 본인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 3.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이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

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분과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1.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 3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해당 분과에 소속된 중앙동아리의 정회원인 자
- 2. 분과에 소속된 중앙동아리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분과에 소속된 중앙동아리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후보 간 중복추천은 가능하며 「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의하며 본인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 3.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이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제3장 기관

제1절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 【목적】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및 분과장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및 분과장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10조 【직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 1. 동아리연합회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 2.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대한 홍보
- 3.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기 위한 활동
5. 동아리연합회 선거 관련 취재 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동아리연합회 회칙」·이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7. 「동아리연합회 회칙」·이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8. 선거공영기금의 편성·운영 및 결산 공개
9.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0. 그 밖에 동아리연합회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11조 【위원】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장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2. 각 분과에서 선임한 2인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 분과의 분과회의에서 해당자의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파견에 관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자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인 경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기구에서 사퇴 공고가 게시되었을 경우 사퇴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재선거·보궐선거는 구성 당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직 혹은 이에 준하는 직에 있는 자로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재선거·보궐선거는 해당 분과의 분과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임한다.

⑥ 각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모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제10조와 제13조에 명시된 직무 및 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중 1인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제13조 【위원의 의무】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의 해임사유】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4. 이 회 정회원·준회원이 아닐때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한다.

제15조 【위원의 사임·추가임명】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새로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④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집】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② 제1항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17조 【개의·의결요건】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의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석요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20조 【선거운동본부장회의】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해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의 임기 개시와 함께 해산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2조 【목적】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제23조 【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정회원·준회원이어야 한다.

제24조 【모집】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는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후보자의 이름, 소속 동아리, 학번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동아리, 학번
4. 담당자 한 명의 연락처
5. 500자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소개

② 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공고문을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했을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25조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제34조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공간에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가 임명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동아리·학과(부),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27조 【업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8조 【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이 세칙 및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 동아리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사무실
2. 동아리연합회 창고 등 동아리연합회실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
3. 그 외에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③ 제2항에 따라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30조 【분과장 선거에 관한 특례】 분과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선거운동본부를 조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이 세칙에서 요구하는 선거운동본부와 선거운동본부장의 업무는 분과장 선거 후보자가 수행하며, 징계는 분과장 후보자가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31조 【선거 일정】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는 11월 중, 분과장 선거는 3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기간과 분과장 선거 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추천 및 등록 기간을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5일 이내, 투표일을 3일(투표율 미달 시 투표일을 최대 2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분과장 선거 추천 및 등록 기간을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5일 이내, 투표일을 1일(투표율 미달 시 투표일을 최대 1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그 외에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선거 공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 개시일 3일 전에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34조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3. 제34조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명단
5. 제11조제7항에 따른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33조 【후보 등록·추천】 ① 추천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② 추천 서식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핵심 선거공약을 병기할 수 있다.

③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34조 【후보 등록 신청】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1호의 서식에는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선거운동본부명, 제27조와 제28조에 명시된 선거운동본부의 업무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1. 입후보자 지원서(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2. 추천인 명부(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3. 동아리연합회 회장 후보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각 1부
4. 동아리연합회 회장 후보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의 동아리 활동증명서 및 이력서 각 1부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6. 포스터용 사진(파일로 제출한다)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18시 30분으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35조 【후보 등록 심사】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1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8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동아리연합회 회장 후보,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분과장 선거의 경우 분과장 후보만) 참석하여야 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조의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8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조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④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36조 【후보 등록】 제35조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또는 분과장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37조 【규칙 확정 회의】 ① 제35조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이 세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제29조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위치
3. 그 밖에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38조 【후보자의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3. 각 분과의 분과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한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39조 【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자 두 명이 직접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문서로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신분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인의 임기 개시 후 즉시 임시 동아리대표자회의를 개의하여 이를 심사한다.

③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40조 【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동아리, 학번
2. 추천인 수
3.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자의 이력
4. 선거운동본부명
5.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6. 포스터용 사진

② 핵심 선거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비슷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41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이 회 집행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42조 【사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경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33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3. 설문조사
4. 후보자 추대모임
5. 제24조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③ 제2항제4호의 후보자 추대모임은 등록 예정인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을 명시하고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실내에서 시행한다.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로 한정한다. 대자보 이외의 선전물을 사용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4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2.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3. 현재 동아리연합회 분과장의 직에 있는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의 직에 있는 자
5.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자

-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 및 위원의 직에 있던 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4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
2. 공청회 참가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부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5조 【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동아리방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이다.

-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⑤ 제3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6조 【공청회】 ① 공청회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한다.

- ② 공청회가 개최된 경우 후보자는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공청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공청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가 공청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③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참석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 ④ 공청회의 진행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⑤ 공청회의 내용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7조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게시물·유인물이 제48조 및 제49조의 규격에 맞지 않을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유인물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유인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④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포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게시물·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 【게시물】 ①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관에 A0 크기 이하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게시관에 부착하는 대자보를 합하여 2매가 넘을 수 없으며, 종류는 제한이 없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가로 10m, 세로 1.1m 이하의 현수막을 1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착 장소 및 제2항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9조 【유인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횡수에 상관없이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유인물의 배포 시 크기는 A3 크기 이하로 한다. 단, 유인물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1 크기 이하로 한다.

③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의 총 부수는 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다.

④ 제2항의 유인물 크기와 제3항의 유인물 부수를 어기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0조 【정책자료집】 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공동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② 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크기 20쪽 이내로 제작한다. 부수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협의하여 규칙 확정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④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⑤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책자료집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배포하여야 한다.

⑥ 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1조 【선거운동본부복】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절 이의제기

제52조 【이의제기의 방식】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⑥ 재적 동아리 10분의 1 이상의 소속 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4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3조 【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징계

제54조 【징계】 징계는 이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 또는 분과장 후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제55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 ②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시정명령 2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한다.
-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 또는 분과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6조 【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또는 분과장 후보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 1. 제24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 2. 제25조제3항, 제25조제5항, 제41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에 문제가 있을 때
- 3. 제26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 4. 제47조제2항의 게시물·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 5. 제51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복의 심의 결과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 6. 제52조제5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 7.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57조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또는 분과장 후보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두 번 받았을 때(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한다)
- 3. 제24조제4항의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의 모집 공고문을 게시할 때
- 4. 제25조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때
- 5. 제29조제3항의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 6. 제35조제4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 7. 제43조제5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 8. 제45조제5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9. 제46조제2항의 공청회 시작 10분 전까지 공청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 10. 제47조제3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 11. 제48조제4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 12. 제49조제2항의 유인물 크기 또는 제3항의 유인물 부수를 어긴 경우
- 13. 제50조제3항의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 14. 제51조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
- 15. 제90조제2항의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 16.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제58조 【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또는 분과장 후보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이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 3. 제33조제3항의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를 할 때
- 4. 제42조제3항의 대자보 이외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을 사용할 때
- 5. 제42조제4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 6. 제47조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포할 때
- 7.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 8.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 9.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때
- 11.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 12.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 13.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 14.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제59조 【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고를 받거나, 주의 2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또는 분과장 후보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징계 재심의를 징계의 유지 또는 하향 조절을 결정하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 취소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투표

제60조 【투표방법】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와 분과장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1조 【투표관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제62조 【투표일·투표시간】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투표는 3일간, 분과장 선거 투표는 1일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선거권자의 과반을 넘지 않았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분과장 선거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선거권자의 과반을 넘지 않았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1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투표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63조 【투표소】 ① 투표소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② 투표소 1개 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투표소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⑥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동아리연합회 회장 후보자 및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동아리,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수가 많은 순서로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정한다.

③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분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④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기권”란을 두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요원의 확인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투표참관인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⑥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접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두 칸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칸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제65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각 투표일 9시까지 각 투표소로 송부한다.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에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제66조 【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관리요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별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67조 【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투표용지 배부】 ①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미리 서명·날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단,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투표참관인을 파견하지 않은 투표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 확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9조 【기표·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70조 【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④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④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 ⑤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2조 【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제51조제2항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본부의 착용은 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 밖에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이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제73조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 【후보자의 투표 권유 행위】 후보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5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6조 【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8시 30분에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 및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한 명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77조 【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③ 자물쇠를 이용해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78조 【투표함 확인】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79조 【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성립

제80조 【투표 성립 요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와 분과장 선거는 재적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로 성립한다.

제8절 개표

제81조 【개표관리】 ① 개표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소에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82조 【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83조 【개표장】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4조 【개표소】 ① 개표소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85조 【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각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제86조 【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 투표자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계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5.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87조 【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5.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요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때 투표 기간 중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③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제88조 【투표함의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단, 명부상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 오차는 3까지 허용한다.

②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단, 명부상 총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 총오차는 3까지 허용한다.

제89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아리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90조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1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②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91조 【개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한 명을 선정하여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92조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3조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당선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

제94조 【당선의 기준】 ①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개표 결과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선 후보로 한다. 단, 투표 기간 중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가 최다 득표한 경우 당선 후보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유효투표 중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보다 많을 경우 그 후보를 당선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일 때에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96조와 제97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가 넘을 때(단, 명부상 총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 총오차는 3까지 허용한다)
2. 최고 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일 때(단, 한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가 투표 기간 중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조가 당선된 것으로 본다)
3.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단, 1위 득표 조와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 중 투표 기간 중 후보 자격이 박탈된 조가 있을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조가 당선된 것으로 본다)
4. “찬성”표의 수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 간의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을 때

5.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에 기표한 사람의 수를 넘을 때
6.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을 넘지 않을 때

제95조 【당선 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당선인의 이름, 소속 동아리, 학번
2. 동아리연합회 회장·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당선인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투표 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총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한다)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제96조 【재투표·결선투표】 ①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에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 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단, 명부상 총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는 총오차가 3이 넘었을 때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 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에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에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④ “찬성”표의 수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 간의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을 때에는 재투표를 시행한다.

⑤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단, 분과장 선거의 경우 하루만 시행한다.

제97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04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
2. 투표율이 선거권자 과반을 넘지 않았을 때
3. 재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단, 명부상 총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는 총오차가 3이 넘었을 때)
4. 재투표에서도 “찬성”표의 수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 간의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을 때
5.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보다 많을 때
6.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을 넘지 않을 때

② 재선거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혹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시행규칙

제98조 【선거시행규칙】 ①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35조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가 이 세칙을 준용할 때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동아리연합회 총투표시행규칙이라 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동아리연합회 총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제99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의 발의
2.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발의
3. 제37조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2.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③ 제98조제2항에 따른 각 동아리연합회 총투표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가 발의하고, 동아리연합회 투표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징계세칙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3호]

2013. 6. 5. 제 정	2015. 10. 31. 전부개정
2019. 2. 28. 일부개정	2019. 4. 27. 일부개정
2019. 10. 26. 일부개정	2020. 05. 0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1~4
제2장 징계위원회	5~12
제3장 개인회원에 대한 징계	13~17
제4장 동아리에 대한 징계	18~21
제5장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22~25
제6장 징계규칙	26~27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공동체 내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고 이를 통해 상호 협동과 책임감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분류】 ① 개인회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 영구제명으로 분류된다.

② 동아리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재정지원 박탈, 제명안건 회부로 분류된다.

제3조 【징계의 결정】 징계여부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제4조 【징계의 소멸】 동아리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는 해당 징계가 내려진 해의 제4회기가 종료되면 소멸된다.

제2장 징계위원회

제5조 【개최】 이 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 동아리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 된 정회원 40명 이상의 연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총학생회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구성】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구성원의 확정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개의·의결요건】 ①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사건 당사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의 예정일 3일 전까지 개의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사건 당사자의 권리】 사건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건 당사자는 징계위원회에 개의 예정일 1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사건의 사실규명에 있어 힘써야 하고, 사건 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 징계위원회는 이 회의 모든 징계를 강제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 원칙】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공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회원에 대한 징계

제13조 【절차】 개인회원에 대한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4조 【주의】 ① 주의는 자치공동체 내에서의 경미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게 부여될 수 있다.

② 위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건 당사자는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제15조 【경고】 ① 경고는 자치공동체 내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게 부여될 수 있다.

② 경고는 주의 2회가 누적된 경우에 자동으로 부여된다.

③ 위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건 당사자는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제16조 【자격박탈】 ① 자격박탈은 대학문화의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② 자격박탈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동아리연합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③ 자격박탈은 경고 2회가 누적된 경우에 자동으로 부여된다.

④ 자격박탈 기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때 자격박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⑤ 동아리 대표가 해당 징계를 부여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탄핵된다.

⑥ 분과장이 해당 징계를 부여받았을 경우 분과회의에 탄핵안건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⑦ 동아리연합회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해당 징계를 부여받았을 경우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탄핵안건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제17조 【제명】 ① 제명은 대학문화의 존속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② 제명이 되면 동아리연합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또한, 과거에 취득한 동아리연합회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된다.

③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건 당사자는 영구적으로 동아리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④ 동아리 대표, 분과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해당 징계를 부여받았을 경우는 각각 이 세칙 제16조제5항에서 제7항까지에 따른다.

제4장 동아리에 대한 징계

제18조 【주의】 ① 주의는 자치공간에서의 경미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중앙동아리의 의무에 소홀한 경우에 한해 부여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동아리에 주의가 부여된다.

1. 자치공간 내 지나친 소음으로 다른 동아리 모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
2. 자치공간 사용 중 공용공간(세미나실, 회의실, 연습실 등) 이용수칙 위반 및 화장실, 정수기 등의

손해가 적발된 경우

3. 분과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4. 분과회의 불참사유서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5.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및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대리인 임명장을 지각하여 제출한 경우
(단, 지각제출은 회의 개의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6.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불참사유서 또는 불참증빙자료를 지각하여 제출한 경우
 7. 사업지원금 내역서를 동아리연합회가 공고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용비품 대여 후 기일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9. 재등록서약서가 통과되지 않고 보류된 경우 (단, 해당 징계는 운위의 심의에 따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10. 재등록서약서를 제출기한 마감 후 24시간 내에 지각하여 제출한 경우
 11. 화재예방서약서를 제출기한 마감 후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12.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불성실하게 참여해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③ 위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해 해당 동아리에 주의 1회를 부여한다.

제19조 【경고】 ① 경고는 자치공간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중앙동아리에 의무를 방기한 경우에 한해 부여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동아리에 경고가 부여된다.

1. 주의가 3회 누적된 경우
 2.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3.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4. 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또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불참사유서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5.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불참사유서 또는 불참증빙자료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동아리연합회 대표자수련회 불참사유서 또는 불참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구성원의 과실로 인하여 자치공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8. 재등록서약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뒤 24시간 이후 제출한 경우
 9. 재등록서약서 등록 명부의 회원 중 허위로 서명하거나 혹은 서명된 회원이 적발된 경우
 10. 자치공간 내 금연공간에서 구성원이 무단으로 흡연한 경우
- ③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동아리에 경고 1회를 부여한다.

제20조 【재정지원 박탈】 ① 재정지원 박탈은 재정사용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한 회기(1년)에 경고가 부여된 경우에 한해 부여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동아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박탈된다.

1. 재정사용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한 회기(1년)에 경고가 1회 이상 누적된 경우
3. 분과 예산을 각 동아리가 수령할 경우 해당 예산의 사용내역서 미제출한 경우
4. 이전 학기에 제명안건에 회부된 경우
5. 사업지원금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때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주의도 부여한다)
6. 기타 공용공간이나 공공기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손망실비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동의를 통해 해당 동아리에 대한 다음 학기 재정지원이 박탈된다.

④ 재정지원이 박탈된 경우 해당 학기 동안 사업지원금과 동아리 교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분과 지원금은 분과장이나 분과회의의 결정에 의해 수령할 수 있다.

제21조 【제명안건 회부】 ① 제명안건 회부는 중앙동아리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하는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동아리에 대한 제명안건이 회부된다.

1. 경고가 2회 누적된 경우
2. 중앙동아리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한 경우
3. 동아리 공간사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대학문화의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도박, 폭력, 공공시설물 파괴 등)
5. 동아리의 성격을 위장하여 등록한 경우
6. 재등록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경우
7. 재등록서약서를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제명안건 회부 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은 해당 동아리의 회부 이유를 이 회의 회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④ 제명안건 회부 시 해당 동아리의 대표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⑤ 제명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제명된 동아리는 이의신청 기간 종료 직후 중앙동아리 등록이 취소된다. 이때 해당 동아리는 등록 취소와 동시에 제명된 학기에 받은 재정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등록 취소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과 협조하여 동아리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10일은 동아리연합회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말을 포함해서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명된 동아리가 이에 불응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은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를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당 동아리의 집기 용품들은 동아리연합회실에 강제 반환 시작 시점으로부터 10일까지 보관하고 이후 일괄 폐기한다. (단, 여기서 10일은 동아리연합회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말을 포함해서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명된 동아리는 동아리방 반환시 배정받기 전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동아리가 부담한다.

⑨ 제명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 등록이 취소된 이후 최초의 학기로부터 4학기 동안 이 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5장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제22조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건의 직접적 관계자는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비당사자의 이의제기】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회원은 재적 동아리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정회원 40명 이상의 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재심의】 ① 이의서가 접수되었을 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의안건을 의결한다.

② 재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사건 관계자의 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5조 【결과의 통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재심의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징계규칙

제26조 【징계규칙】 징계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7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징계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의 발의
2. 징계위원회의 발의

② 각 징계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무처리세칙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4호]

2015. 10. 31. 제 정 2019. 2. 28. 전부개정

제1장 총칙	1~5
제2장 사무 처리	6~8
제3장 문서의 작성	9~14
제4장 문서의 서식	15~19
제5장 문서·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20~22
제6장 기록물의 보관	23
제7장 기록물의 공개	24~26
제8장 사무처리규칙	27~28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이 회의 각 기구의 사무 처리의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회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작성자”라 함은 문서를 생산한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책임자”라 함은 사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수신자”라 함은 사무 처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대표자의 책임】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분과장, 동아리대표자 등은 이 회의 사무 처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이 회의 각 기구에 적용한다.

제2장 사무 처리

제6조 【사무 처리의 원칙】 ①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회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무의 분장】 사무 처리의 책임자는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서별 사무를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위원간의 업무량이 균형 있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그 외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그 외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명단을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의 작성

제9조 【문서의 종류】 ①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회칙·세칙·규칙 등에 관한 문서
2. 공고문서: 공고 또는 일정한 안내사항을 산하기구 혹은 회원 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
3. 지시문서: 이 회의 각 기구가 그 산하기구나 소속 위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문서
4. 비치문서: 이 회의 각 기구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명단 등의 문서
5. 처리문서: 회원이 이 회의 각 기구에 허가, 신청,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부문서, 내부문서, 안전지 등의 문서

② 동아리 활동증명서는 동아리 회원명부를 따르며, 동아리 대표의 허가가 있어야 성립된다.

③ 2015년 10월 31일 이전의 활동회원과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92조제3항에 따라 회원명부에 대한 비공개요청을 한 동아리 회원의 증명서는 동아리 대표의 허가만으로 성립된다.

제10조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① 문서는 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서명은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전자문서의 도달은 수신자의 컴퓨터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문서의 생산 의무】 ① 이 회의 각 기구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미리 그 조사·기획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의 표준화 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제12조 【문서의 생산】 ① 이 회의 각 기구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인쇄물 두 가지 형태로 생산한다.

③ 모든 문서에는 기록물 책임자와 작성자의 소속, 지위,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이 회의 각 기구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이며, 해당 문서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⑤ 작성자가 여럿일 때는 각 작성자가 기록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자를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문서의 전자적 생산·관리】 이 회의 각 기구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① 문서는 대한민국 법률 「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

게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A4)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문서의 서식

제15조 【의결기구 문서의 서식】 의결기구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불참사유서
2. 대리인 임명장
3. 회의 소집요구서
4.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5. 회의록
6. 회의 자료집
7. 회의 안건지

제16조 【집행기구 문서의 서식】 집행기구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각종 공문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명단

제17조 【선거 문서의 서식】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일반규칙으로 정한다.

1.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선거관리위원 해임 요구서, 사직 요청서, 추가임명 동의안이 첨부된다)

2.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요구서
3.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선거공고문
5. 입후보자 공고문
6. 사과문
7. 정책 자료집

8. 후보자 이의제기서
9. 개표 결과
10. 당선 공고문

제18조 【재정 문서의 서식】 이 회의 각 기구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1.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예산안·결산
2.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결산

제19조 【회칙·세칙·규칙 문서의 서식】 회칙·세칙·규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 대표자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개정 이력
2.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안
4. 개정안 공고문

제5장 문서·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제20조 【기록물에 대한 의무】 이 회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제21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이 회의 각 기구는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각 기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회의 각 기구는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기록물의 보존】 ① 특정 기구에 속한 기록물은 해당 기구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기록물철을 이룬다.

② 기록물철은 회기별로 기록물군을 편철하며 기록물철 내 기록물들의 생산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특정 기록물철 내의 기록물들의 생산 회기가 다를 경우 가장 생산 시기가 앞서는 기록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기록물이 누락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기록의 종류를 쓰고 공란으로 처리한다.

④ 이 회의 각 기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메타기록물을 생산해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기록물군과 함께 보관한다.

1. 각 기록물철에서 누락된 기록물과 누락 사유
 2. 각 기록물철에 추후 포함된 기록물과 추가 사유와 일시
 3. 기록물철 이관 일시
 4. 기록물철의 기록물 목록
- ⑤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로 인해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제6장 기록물의 보관

제23조 【기록물의 보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보관한다.

1. 집행기구·분과의 의결기관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
2. 중앙동아리 재등록서약서
3. 중앙동아리 사업지원금 관련 자료(신청서, 사용내역서)
4. 동아리연합회 사업·행사 관련 자료(자료집, 리플릿 등)
5.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분과장 선거에서 생산된 정책자료집, 유인물 등의 각종 선거 관련 자료
6. 중앙동아리 학기별 회원 명부
7. 동아리연합회 가등록·정식 등록 신청서
8. 개인회원에 대한 징계를 받은 회원과 징계의 단계를 표시한 명부
9. 그 밖에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기록물

제7장 기록물의 공개

제24조 【기록물의 공개】 이 세칙이 규정한 모든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정보공개청구】 ①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 보관 중이나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인쇄 기록물의 원본은 대여할 수 없으며, 동아리연합회실 내에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통해서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기록물의 활용】 ① 회원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자는 이 회의 기록물을 학술, 행정, 의사 결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각 기구의 업무 중 누락된 기록물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리규칙

제27조 【사무처리규칙】 사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사무처리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의 발의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의 발의

② 각 사무처리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회의진행세칙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5호]

2015. 10. 31. 제 정 2019. 02. 28. 전부개정
2019. 10. 26. 일부개정 2020. 05. 0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1~6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7~15
제3장 회의의 구성	16~24
제4장 안전	25~30
제5장 발언	31~37
제6장 동의	38~47
제7장 표결	48~52
제8장 회의록	53
제9장 소규모회의	54
제10장 회의진행규칙	55~56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각종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회의결기구의 회의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회의체”라 함은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회의”라 함은 회의체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의결”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회의진행세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제4조 【대표자의 책임】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구성원 등은 이 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이 회의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 회의에 적용한다.

제6조 【세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30조와 제131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제7조 【공개 원칙】 ① 이 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단,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의 회의의 의결사항과 회의록은 공개한다.

제8조 【정족수의 원칙】 이 회의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8조에서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따른다.

제9조 【일의제의 원칙】 이 회의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론자유 원칙】 ① 이 회의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의장은 필요할 때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② 발언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③ 발언권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평등의 원칙】 이 회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다수결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4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① 한 번 처리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같은 회의체 또는 하위 회의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하면 한 번만 같은 회의체 또는 상위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2항, 상위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4항에 따른다.

② 한 번 처리된 안건을 같은 회의체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가진 안건은 한 번 처리되면 같은 회기 중에 같은 회의체 또는 하위 회의체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한 번 처리된 안건을 상위 회의체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회의체의 안건 발의 요건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의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제15조 【회기 불계속의 원칙】 ① 이 회 회의체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된다. 단,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위 회의체로 안건 위임되거나, 기한부 연기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될 수 있다.

② 안건 위임과 기한부 연기동의는 해당 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주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이에 따른다.

③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회의체는 한 회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의 안건 위임 또는 기한부 연기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제3장 회의의 구성

제16조 【의결권】 ①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② 이 회와 특정 구성원과의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할 때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이 회의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본회의 회칙에서 규정한 대리인 임명장을 회의 이전에 제출한다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 【의장】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이 회 회의체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이 회 회의체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서기장과 서기】 ① 이 회 각 회의체는 개의 직후 구성원 중 한 명을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서기장으로 임명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제외한다. 서기장은 필요에 따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서기장은 서기를 관리, 감독한다.

③ 서기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한다.

제19조 【소집】 ① 의장은 회의 일주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각 구성원에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역에 있다.

제20조 【의사정족수】 이 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21조 【회순】 개의로부터 산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에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의선언
3. 보고사항
4. 안건심의 순서 확정
5. 안건심의
6. 산회선언

제22조 【회의 용어의 정의】 ① 이 세칙에서 “개회”라 함은 한 회기 동안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개의”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이 세칙에서 “유회”라 함은 개의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의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정회”라 함은 회의 도중 사정에 의하여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세칙에서 “산회”라 함은 의사정족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⑥ 이 세칙에서 “폐회”라 함은 한 회기 동안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회의의 산회·유회·정회】 ①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속회할 방안을 논의하거나, 회의의 정회 또는 산회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되면 의장은 같은 회기 중에 회의를 재소집한다. 같은 회기 중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회의체에 제출된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의가 산회되면, 의장은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하위 회의체

에 위임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단, 하위 회의체로 위임할 수 없는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제24조 【의사조정위원회】 ① 회의 개의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의사조정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사조정위원회는 회의체 구성원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제4장 안건

제25조 【안건】 ①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③ 발의된 모든 안건은 특별안건과 일반안건으로 구분된다.

④ 특별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당된다.

1. 제71조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86조의 분과 신설·폐지·통합 재편안에 관한 사항
3. 제89조의 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제90조의 정식등록에 관한 사항
5. 제91조의 재등록에 관한 사항
6. 제124조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 「징계세칙」에 따라 상정된 동아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⑤ 일반안건에는 그 외의 모든 안건이 해당된다.

⑥ 일반안건도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의하여 해당 의결기구가 의결하면 특별안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26조 【안건의 제출·상정】 ① 안건의 제출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세칙·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안건의 제출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기회의를 제외한 회의에서 소집 공고부터 산회 전까지의 안건 발의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기회의의 소집 공고부터 산회 전까지 발의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27조 【철회】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8조 【안건 심의】 ①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병합하여 상정하

거나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 또는 동의를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제29조 【토론·동의】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수정을 비롯한 동의들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30조 【안건의 처리 순서】 ①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5.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② 안건 심의 중 동의를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동의를 처리결과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장 발언

제31조 【발언권】 ①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② 발언권을 얻은 자는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③ 구성원은 이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구성원이 아닌 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발언 횟수와 시간】 ① 회원은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하여 3회까지 발언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회원의 1회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신상발언】 신상발언이라 함은 자신의 신상문제가 구성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제34조 【의사진행발언】 ①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의장이 회의진행을 적절하게 주재하지 못할 때 회원이 의장에게 적절하게 주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② 의사진행발언은 규칙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정회, 축조심의, 특청, 일정축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 요구 등으로 한다.

제35조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의 발언허가】 ①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동의보다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신상발언, 규칙발언, 특청, 일정촉진에 관하여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회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6조 【의사진행발언의 처리】 ①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결정 중 규칙발언 이외의 발언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 회원의 항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항의를 회의체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장의 결정은 반복된다.

③ 규칙발언은 의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세칙 등을 참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37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장 동의

제38조 【동의】 동의는 다른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에 대해 회의 중에 새롭게 토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 【동의의 성립·상정】 ① 속회동의를 제외한 모든 동의는 구성원 한 명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②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에 따른 의제 속에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0조 【동의의 종류·서열】 ① 동의에는 속회, 토론종결, 연기, 회부, 수정, 재심의동의 등이 있다.

② 동의들 사이의 서열은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순서와 같으며, 상위 동의가 계류 중인 때에 하위 동의는 제출될 수 없다.

제41조 【준용】 동의에는 제1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2조 【재심의동의】 ① 재심의동의를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② 일단 회의가 산회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③ 재심의동의에 의해 제출된 재심의안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수정동의】 ① 수정동의를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경쟁적, 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이다.

② 수정의 방식으로는 개별방식과 포괄방식이 있으며, 개별방식에는 삽입, 삭제, 대체가 있고 포괄방식

에는 대안이 있다.

③ 수정동의에 의해 수정안 또는 대안이 제출되면 제8조에 따라 의결한다. 복수의 수정동의에 의해 복수의 수정안 또는 대안이 제출되면 이를 일괄 제출받아 택일표결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수정안 또는 대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다.

제44조 【회부동의】 ① 회부동의를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② 안건 일부의 처리를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것도 이 동의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그 명칭, 위원의 수와 그 선출 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회의체가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면 위원 중 한 명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이 회의는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회부취소의 결의로 그 안건을 돌려받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 회의가 직접 심의할 수 있다.

⑤ 이 회의는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⑥ 회부동의를 성립되면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부안을 의결한다. 회부안이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연기동의】 ① 연기동의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② 연기동의를 일정시간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란 명시가 없으면 다음 안건의 심의종료 시까지 연기하자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연기동의를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은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기한부 연기동의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다음 회기로 이월하자는 동의이다.

⑤ 기한부 연기동의를 의해 제출된 기한부 연기안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주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이에 따른다.

제46조 【토론종결동의】 ① 토론종결동의를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이다.

②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 명씩의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즉시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의에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은 토론을 종결시킨 후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 【속회동의】 ① 속회동의를 정회된 회의를 재개하자고 하거나 다음 일시를 정하여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이다.

② 속회동의를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속회동의를 제출은 의장에게 한다.

③ 속회동의를 제출되면 의사조정위원회는 의사조정위원회의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회된 회의를 재개하거나 회의를 속개할 일시를 정한다.

제7장 표결

제48조 【표결】 ① 안건과 동의를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과 동이가 그 대상인지를 밝혀야 한다. 단, 회원들이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일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구성원이 제의하여 해당 회의가 의결하거나 재적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단,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진행에서 무기명투표 제의는 이에 대한 기명투표가 진행되며, 재적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에 받아들여진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세칙, 규칙에서 정하여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

④ 표결에는 회의장에 있는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참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⑤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의장 또는 대의원의 제의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⑦ 특별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기권이 유효투표수에서 제외되고, 일반안건의 표결의 경우 기권이 유효투표수에 포함된다.

제50조 【택일표결방법】 ① 택일표결에는 일괄표결과 순차표결이 있다.

② 일괄표결을 할 때는 복수의 안들을 일괄적으로 표결하여 과반수를 얻은 안을 다시금 찬반표결에 부친다.

③ 제2항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안이 나오지 아니하면 상위 2개의 안을 결선투표에 부쳐 상대적으로 다수인 안을 찬반표결에 부친다. 이때 결선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오면 의장이 추첨으로 정한다.

④ 순차표결을 할 때는 복수의 안들 중 회의체에 최후로 제출된 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의결정족수를 만족하는 안이 나오면 표결을 중단하고 해당 안이 가결된다.

제51조 【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정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2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8장 회의록

제53조 【회의록】 ① 이 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의·정회·유회 또는 산회의 일시
 3. 개의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4. 구성원이 대표자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 사항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표결 결과
 8. 하위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 안건 위임될 때 위임되는 안건의 제목
 9.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회의록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중 한 명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 ④ 회의록은 의장이 서명·날인하여 공개한다.
- ⑤ 소규모회의는 제1항의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장 소규모회의

제54조 【소규모회의】 ① 소규모회의라 함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 내외인 회의체를 말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이 넘더라도 소규모회의로 본다.
- ③ 소규모회의는 제17조제4항의 의장의 토론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소규모회의는 제19조의 회의 일주일 전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소규모회의는 제32조제1항의 발언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소규모회의는 제39조제1항의 모든 동의의 성립에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0장 회의진행규칙

제57조 【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

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

제58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이 발의한다.

②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점검세칙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6호]

2015. 10. 31. 제 정 2019. 2. 28. 전부개정

제1장 총칙	1~5
제2장 안전점검규칙	6~7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증진시킴으로써 모든 동아리 모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점검 의무】 ① 학생회관의 공간을 이용하는 중앙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감독 하에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진행하는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안전점검이 결정되면 이 세칙에 명시된 징계 부여 원칙을 포함한 안전점검규칙을 제정한다. 이때 제정된 규칙은 해당 안전점검 시에만 효력이 있다.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안전점검 3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안전점검규칙과 일정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④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규칙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3조 【화재안전 징계】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동아리에 주의를 부여한다.

1. 동아리방에 동아리원 부재 시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단,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3. 동아리방 내에 안전점검규칙에 명시된 화재위험물질이 위치한 경우
4. 동아리방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이때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동아리에 경고를 부여한다.

1. 동아리방 내에 사용된 담배, 담뱃재 등의 흡연 흔적이 발견된 경우
2. 동아리방 내에서 안전점검규칙에 명시된 인화성 연료의 사용 흔적이 적발된 경우(단,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점화기구의 보관은 허용한다)
3. 동아리방 내에 위치한 화재경보기를 고의적으로 파손시키거나 막아놓은 경우
4. 학생회관 내에서 폭죽, 화염방사기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발화기구의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5. 방화구획(방화문, 방화셔터 등)을 동아리 비품으로 막은 경우

제4조 【위생안전 징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동아리에 주의를 부여한다.

1. 동아리방 내에 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될 경우
2. 동아리방 내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허가 받지 않은 동물의 사육이 발견될 경우

제5조 【기타안전 징계】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학생회관을 이용한 학내 행사 기간(동아리박람회, 석탑대동제, 가을축제 등)에 동아리연합회 혹은 총학생회에서 공지한 안전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동아리에 주의를 부여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학생회관 6층 야외 구역 등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입을 금한 구역에 출입할 경우 해당 동아리에 경고를 부여한다.

③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관련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안전점검규칙

제6조 【안전점검규칙】 안전점검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안전점검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안전점검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의 발의
2. 제2조제2항의 안점점검 결정에 따른 발의

② 각 안전점검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격회의진행세척

2020. 05. 09. 제 정

제1장 총칙	1~5
제2장 원격회의의 조건	6~9
제3장 원격회의의 구성	10~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이 회 산하의 회의체를 원격회의로 전환할 시 현장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원격회의’이라 함은 각 회의체의 구성원이 화상통신 및 음성통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화상통신’이라 함은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회의체 참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것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음성통신’이라 함은 음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회의체 참여자의 육성이 들리는 것을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플랫폼’이라 함은 원격회의가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의 정의는 「회의진행세칙」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각 의결기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장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회에 속하는 각종 회의체 및 중앙동아리 내 회의에서도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대표자의 책임】 각 회의체의 구성원은 현장회의가 원격회의로 진행될 시, 해당 회의가 현장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칙과 회의진행세칙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규칙의 해석】 이 세칙의 해석은 「회의진행세칙」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원격회의로의 전환

제6조 【정기회의 전환 조건】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24조에 의해 일정이 확정된 동아리연합회 총회, 제45조에 의해 일정이 확정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제55조에 의해 일정이 확정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재적 대의원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시 원격회의로 전환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에 의해 교내 인접지에서의 회의 진행이 회의체 구성원, 대리인 및 방청인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에 의해 교내 인접지에서의 회의 진행이 회의체의 구성원, 대리인 및 방청인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교내 인접지에서의 회의 진행이 회의체의 구성원, 대리인 및 방청인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제7조 【임시회의 전환 조건】 제46조에 의해 일정이 확정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와 제56조에 의해 일정이 확정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제6조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될 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 원격회의로 전환할 수 있다.

제8조 【원격회의로의 전환 안내】 ① 제6조와 제7조에 의해 각 회의체의 현장회의를 원격회의로 전환할 경우 해당 회의체의 의장은 지체 없이 그 배경과 사유가 명시된 경위문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② 한 회의체에서 다수의 현장회의가 동시에 원격회의로 전환될 경우 각 회차의 경위문을 하나의 경위문으로 병합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현장회의로의 재전환】 원격회의로의 전환이 안내된 회의가 차후에 제6조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회의로 재전환하여 장소를 선정해야하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의 경우 이 때의 절차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55조 2항을 따른다.

제3장 원격회의의 구성

제10조 【플랫폼】 각 의결기구의 의장은 원격회의 진행 이전에 화상통신과 음성통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을 각 의결기구의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 ① 원격회의에서 회의체의 구성원은 화상통신과 음성통신의 의무를 진다.

② 구성원의 출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화상통신과 음성통신이 모두 원활해야 한다.

③ 회의 진행 도중 구성원의 화상통신 또는 음성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성원은 부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서기장과 서기】 ① 서기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서기 업무를 진행한다. 이때 서기는 화상통신의 의무가 있으나 음성통신의 의무는 없다.

② 서기장은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서기가 기록한 사항에 대한 원격제출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방청·발언권】 ① 이 회의 회원은 각 회의체의 원격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각 회의체의 원격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각 회의체의 의장은 본 회의 회원이 해당 회의를 자유롭게 방청·발언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플랫폼 내의 질서 및 원격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발언 및 표결】 원격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현장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